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해자 재산정보 조회 근거 마련 등〉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206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4
2. 장해·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6
3.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12
4. 외국인에 대한 구조범위 확대	15
5. 가해자 재산정보 조회 근거 마련 등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8. 26.
3. 회 부 일 : 2024. 8.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은닉이 매우 용이하므로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자백 시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 목적 달성 시 조회한 자료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항 단서 신설)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

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제4항 신설)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청구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23조)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함.

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안 제29조의2, 안 제29조의3 신설)

- 1)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토지 및 건물의 등기정보자료 등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일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일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인권 주일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인권 주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기간을 1주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일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

□ 다만, 최근 개정·공포된 「범죄피해자 보호법」²⁾에는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유사입법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 주간) 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3.21.] [법률 제20433호, 2024.9.20., 일부개정]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2. 장해·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장해·중상해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유족에게 해당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되, 유족의 범위 및 지급 순위는 현행 유족구조금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17조제2항, 제18조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 ② (생략)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 ② (생략) ③ ----- -----.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

현행	개정안
<u>족구조금</u>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u>유족구조금</u>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행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u>유족구조금</u>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u>유족구조금</u>을 받을 수 있는 선행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u>유족구조금</u>을 받을 수 있는 선행위	<u>족구조금</u>이나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u>장해구조금</u> 또는 <u>중상해구조금</u>(이하 “<u>유족구조금등</u>”이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유족구조금등</u>----- ----- ----- ----- ----- -----. ④ ----- ----- <u>유족구조금등</u>----- -----. 1. (현행과 같음) 2. ----- ----- <u>유족구조금등</u>----- ----- ----- ----- 3. ----- <u>유족구조금등</u>-----

현행	개정안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 ④ (생략) ⑤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⑥·⑦ (생략)	----- -----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⑥·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³⁾상 구조금은 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장해·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됨.

○ 장해·중상해 구조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장해·중상해를

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입은 구조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해당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구조대상은 장해·중상해를 입은 구조피해자 본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제3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구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유족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구조금 지급 결정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범죄피해와 인과 관계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신청자가 생존해 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사망한 신청자 대신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범위 및 지급 순위는 현행 유족구조금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임.

○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되고⁴⁾, 장해·

4)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중상해 구조금액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장해·중상해 정도와 함께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음.⁵⁾

-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구조피해자의 장해·중상해로 생계에 지장을 받은 부양가족 등 유족에게 구조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는 유족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은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등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⁶⁾

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구조금액)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생략)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생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이하 각 호 생략)

제17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 다만, 최근 개정·공포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7)에는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제3항 및 제4항 생략)

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제2항 및 제3항 생략)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3.21.] [법률 제20433호, 2024.9.20., 일부개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이나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이하 "유족구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생략)

③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행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행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행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3.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구조피해자나 유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7조제1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u>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u>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 ----- <u>구분한다.</u>
②·③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④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u>다만,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u>
	1.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

현행	개정안
	<u>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u> 2. <u>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부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구조피해자나 유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개정·공포된 「범죄피해자 보호법」⁸⁾에는 개정안과 동일한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3.21.] [법률 제20433호, 2024.9.20., 일부개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④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

내용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4. 외국인에 대한 구조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 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 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 다.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구조피 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1.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2.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 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 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 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

현행	개정안
	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⁹⁾의 영주자격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¹⁰⁾의 장기체류자격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상호보증이 없는 국가의 외국인이

9)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10)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결혼이민자에 해당할 경우 구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구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구조대상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①
현행법 제18조제1항¹¹⁾ 유족구조금의 유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점, ②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¹²⁾상
“결혼이민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한하여 결혼이민자 지원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¹³⁾의 결혼이민 체류자격에서

-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
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
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1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
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
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7.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개정·공포된 「범죄피해자 보호법」¹⁴⁾에는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3.21.] [법률 제20433호, 2024.9.20., 일부개정]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1.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2.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5. 가해자 재산정보 조회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지구심의회회의 심의·결정 사항 및 이를 위한 조사 등의 근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안 제24조 및 제29조), 지구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가해자의 재산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제24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제2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생략)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 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u>지급</u> 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② ----- ----- ----- <u>지급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u>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u>지급</u>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u>신청인이나</u>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 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 ----- ----- <u>지급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u> ----- ----- ----- ----- -----.

현행	개정안
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자료요청) 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가해자의 토지·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3.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4. 가해자의 전세권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5. 가해자의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록자료 및 선박 등기자료 6. 가해자가 임차한 주택에 관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자료 7. 가해자의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해자의 보수·소득 자료(가해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9. 가해자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29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현행	개정안
	<u>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금융 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적금·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증서의 가액</u>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 ②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금융정보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가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제47조(벌칙) ①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된 금융정보등은 가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⑦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금융정보등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47조(벌칙)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①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9조(양벌규정) ----- ----- ----- ----- ---제47조제2항·제4항----- ----- ----- -----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1조제2항¹⁵⁾은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29조제1항¹⁶⁾은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고 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필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재산정보 등을 조회하려는 경우 현행법 제29조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상 제3자 제공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조회를 위한 자료요청의 근거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구심의회 심의·결정 사항 및 이를 위한 조사 등의 근거에 현행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안 제24조 및 제29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등)하는 내용임.

- 구체적으로, 안 제29조의2는 지구심의회가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토지·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건축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의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자료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 안 제29조의3은 지구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금융정보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등¹⁷⁾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을 금지하며, 제공된 금융정보등을 가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게 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자료를 파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 또한, 안 제47조제1항은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안 제47조제3항은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가해자의 재산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소송 수행과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최근 개정·공포된 「범죄피해자 보호법」¹⁸⁾에는 개정안과 동일한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3.21.] [법률 제20433호, 2024.9.20., 일부개정]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내용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1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자료요청) 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각 항 생략)

제29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이하 각 항 생략)

제47조(벌칙) ①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2항·제4항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